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학원대학 설립 〉

■ 김윤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76호)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10. 14.

다. 회 부 일: 2024. 10.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문학번역원은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번역 아카데미는 비학위 과정으로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며,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여 우수한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번역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③ 정부는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번역대학원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3조¹⁾는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설치하고,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번역가 양성 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문학번역원은 2008년부터 한국문학의 원어민 번역가 양성을 위하여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번역아카데미 운영 교육 과정]

과정명	정규과정 (한국문학·한국어문화예술 콘텐츠 통합과정)	야간과정	번역아틀리에
언어권	7개 언어권(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운영시간	주간	야간(비대면 중심)	야간/격주(비대면 중심)
학제	2년제 (총 60주, 주당 9~15시간)	1년제 (총 24주, 주당 2시간)	1년제 (총 14주, 회당 3시간)
입학시기	가을학기(8월)	봄학기(4월)	봄학기(4월)
재학기간	'23.8.~'25.6.(16기)	'23.4.~'23.12.(16기)	'23.4.~'23.12.(14기)
개설과목	번역실습, 한국문학 및 문화예술 소양교육 등	번역실습	번역세미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1) 「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지만 번역아카데미는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므로, 교원 비자 발급이 불가하여 전임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해외 번역 전문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여 번역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비학위과정에 2년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학생 모집에 한계가 발생하고, 교육을 수료한 후에도 공신력 있는 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워 구직활동 등 수료 이후 경력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 제30조²⁾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을 통해 기존의 번역아카데미를 정식 학위 인정기관으로 격상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교원을 확보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모집하는 등 기존에 번역아카데미가 갖고 있던 한계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체계적인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더라도³⁾, 예상되는 연간 소요 예산은 72억 4,800만원 이상으로, 이는

2)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 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3) 동일한 취지 및 개정사항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024년 기준 번역아카데미 예산액 38억 6,600만원에 비해 약 30억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한 수준인바,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예상 소요 예산 비교]

항목	번역대학원대학교	번역아카데미
인건비	- 인건비 2,498백만원 - 전임교원 15인, 행정직원 12인, 총장 1인 등 총 28인 기준	- 인건비 910백만원 - 교직원(계약직 5인): 310백만원 - 인턴/업무보조원: 106백만원 - 강의사례비: 494백만원
학생 관련 경비	- 수료생 선발비, 장학금 등 2,200백만원 - 입학설명회 개최, 장학제도 확대 등 추가예산 소요	수료생 선발비, 장학금 등 976백만원
기타 운영비	- 관리·운영비: 1,800백만원 - 전임교원 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 자산구입비 350백만원 - 예비비 400백만원	- 관리·운영비: 1,895백만원 - 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단 운영, 디지털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번역교육 학술대회 등 포함 - 자산구입비 85백만원
계	7,248백만원	3,866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개정안은 번역대학원대학의 운영 규정을 「고등교육법」과 그 부속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⁴⁾은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대학원대학을 둔 유

2119919호)의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번역대학원대학의 건물을 새롭게 신설할 경우 토지매입비·건축비·운영비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517억 9,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계된 바 있음. 다만, 현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하게 될 경우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소재한 건물을 번역대학원대학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임.

4)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사 입법례에도 기관장 등을 총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을
을 고려할 때, 안 제13조의제2항 후단에 한국문학번역원장을 번역대학
원대학의 총장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대학원대학 설치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암관리법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임면)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국립외교원법	제8조(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국립외교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

셋째,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인인 한국문학번역원의 부속기관에 해당하는 번역대학원대학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

라서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비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4조⁵⁾를 개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직접 출연하도록⁶⁾ 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므로, 한국문학번역원의 경비 보조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

또한, 「국가재정법」 제12조⁷⁾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이 동 규정의 출연 사유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국립암센터 등 출연금 지급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출연금 관련 입법례]

법률명	조문 내용
암관리법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5) 「문학진흥법」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6)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따라서 번역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경비를 출연하고자 할 경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보조에서 출연으로 변경되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 원 육성법	제2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과학 기술원법	제14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법	제11조(출연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 번역 기반을 견고화하기 위하여 정식 학위 인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잦은 이월 방지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보조금 방식보다 출연금 방식의 예산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이 수행 중인 번역 전문가 양성사업에도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에도 통·번역대학원⁸⁾이 설립·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기능 중복의 소지가 있어 별도의 번역 대학원대학을 신설·운영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9

8) 현재 민간의 통·번역대학원은 4개의 전문대학원, 7개의 특수대학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참고 1

번역아카데미 운영 사업 개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개요

- **(목적)** 번역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으로 한국문학 원어민 번역가를 양성함으로써 한국문학 번역 역량 강화 및 수준 제고
- **(‘24년 사업예산)** 2,691백만원
- **(사업내용)** 총 3개 과정, 7개 언어권 번역 수업 운영

□ 연혁

- 2008년 번역아카데미 설립(정규, 특별, 단기집중과정)
- 2009년 정규과정 언어권 확대(3개 → 4개 언어권)
우수 수료자 대상 심화과정 개설(3개 언어권, 12주 과정)
- 2010년 정규과정 언어권 확대(4개 → 5개 언어권)
심화과정 언어권 확대(3개 → 4개 언어권)
번역아틀리에 개설(7개 언어권)
- 2011~2014년 정규과정, 특별과정, 심화과정, 번역아틀리에 운영
- 2015년 정규과정, 특별과정 학제 개편(1년 → 2년)
- 2020년 정규과정 언어권 확대(5개 → 7개)
문화콘텐츠 번역아카데미 신설(3개 언어권, 12주 과정)
- 2021년 문화콘텐츠 번역실무 고급과정으로 명칭 변경 및 교육과정 개편(3개 → 4개 언어권, 12주 → 24주 과정)
- 2022년 특별과정 명칭변경: 특별과정 → 야간과정
- 2023년 정규과정 개편: 문학 → 문학·문화콘텐츠 번역 통합 교육 과정으로 개편(문화콘텐츠 번역실무 고급과정 폐지)

□ 성과

- **(번역가 양성 실적)** 2008년~2023년 한국문학 번역아카데미 3개 과정 1,500여 명 수료생 배출

-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후속 활동)** 전문번역가로서 한국문학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거나 연구·교육자로서 차세대 번역가 양성 활동
 - 번역아카데미 수료생 해외 출간 한국문학 245종 등 성과
- **(해외 문학상 수상 및 입후보)**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로 활동하는 수료생이 뛰어난 번역으로 한국문학 해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
 -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2023년 입후보 『철도원삼대』 번역가 김소라·배영재, 2022년 입후보 『저주토끼』, 『대도시의 사랑법』 번역가 안톤허, 2022년 사라 맥과이어상 입후보 『뜻밖의 바닐라』 이소영 등
 - 코리아타임즈 번역상, 대산문학상 번역부문 등 국내외 문학 번역상 수상 127건

□ 연도별 번역아카데미 수료 현황

(2024. 8. 31., 명)

과정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규과정	16	20	25	24	19	18	25	16(22)	18(19)
야간과정 (구 특별과정)	40	44	47	53	55	41	40	16(39)	23(42)
아틀리에	-	-	15	9	27	22	16	19	20
문화 콘텐츠 (폐강)	-	-	-	-	-	-	-	-	-
단기심화 (폐강)	20	30	47	26	16	20	17	-	-
계	76	94	134	112	117	101	98	51	61
과정	연도								수료자 총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정규과정	18(19)	16(18)	17(19)	19(18)	18(29)	28(24)	23(25)	24(40)	326
야간과정 (구 특별과정)	23(42)	25(36)	33(34)	27(37)	59	55	50	41	649
아틀리에	20	25	26	22	24	22	12	18	277
문화 콘텐츠 (폐강)	-	-	-	-	40	22	24	-	86
단기심화 (폐강)	-	-	-	-	-	-	-	-	176
계	61	66	76	68	141	127	109	83	1,514

* 연도는 입학 연도, 2년제의 경우 2학년 1학기(가을) 등록 시점 기준으로 작성

참고 2

번역 대학원대학교 운영 소요예산(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소요예산(안)

- (연간 소요 예산) 7,248백만 원 (현 번역인력양성 예산 3,866백만 원 대비 3,382백만 원↑)

*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 시 등록금수입을 운영비에 투입, 번역아카데미 운영 대비 연간 20억원 추가 투입하여 대학원대학교 운영가능

구분	2025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	2027년 예산(안)
등록금수입	768백만 원	1,488백만 원	1,488백만 원
전입금수입	6,480백만 원	7,268백만 원	7,358백만 원
계	7,248백만 원	8,756백만 원	8,846백만 원

- (산출 기준) 문학·콘텐츠 통합과정 7개 언어권*, 전임교원 15인, 입학정원 80명, 재학 정원 160명 기준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 과정 비교표

구분	번역대학원대학교	번역아카데미
강의 시수	학기당 15주/ 이수학점 52~54학점	좌동
개설 과목	26~29개	18개
비교과 프로그램 등	- 답사·견학, 세미나·학술대회, 연수·해외인턴십, 작가대담, 선후배 멘토링, 번역프로젝트, 소모임, 번역심화워크숍 등 운영 예정 -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도입	답사·견학, 연수·해외인턴십, 작가대담
전임교원	15명	-
수강생	160명	140명
졸업후 관리	경력개발 지원 및 관리, 번역가 인력 풀 구축, 졸업생 멘토링 제도, 동문회 운영 등	경력개발 지원 및 관리, 번역가 인력 풀 구축